


| | | | | | |
|---|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| 규정 | | 문서번호 | TWP-A612 | |
| | | | 제정일자 | 2016. 05. 31. | |
| |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 규정 |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 |
| | | | 개정번호 | 2 | 페이지 |

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사업단 운영

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4장 유니테크반 설치 및 운영


제5장 유니테크반 수업 및 학사운영

제6장 보칙

부칙

| | | | |
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부서 | 유니테크사업단 | 제정일자 | 2016. 05. 31. |
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
| 구 분 | 검 토 | | | | | 승 인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직 책 | 사무처장 | 기획처장 유니테크사업 단장 | 교무처장 | 학생취업처장 | 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| 총 장 |
| 서 명 | | | | | | |
| 일 자 | | | | | | |

| | | | | |
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| 규정 | 문서번호 | TWP-A612 | |
| | | 제정일자 | 2016. 05. 31. | |
| |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 규정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 |
| | | 개정번호 | 2 | 페이지 |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인력공단 「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」에 참여하는 동원대학교(이하 ‘이 대학’)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02.19.>
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’이라 함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<개정 2018.02.19.>
2. ‘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단’이라 함은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을 수행하기 위한 동원대학교 산하기관(이하‘사업단’)을 말한다.
3. ‘전문기관’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·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(이하 ‘이 사업’이라 한다)에 한하여 적용 한다.

제4조(사업) 사업단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(프로그램)를 수행한다.

1. 특성화고-전문대-기업간 인력양성
2. 특성화고, 전문대학 참여학과 체제 개편
3. 통합 교육과정 개발 편성 및 구성
4. 통합 교육과정 학사운영
5. 통합 교육과정 시설 및 기자재 운영
6. 통합 교육과정 교원 운영
7. 협약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관리
8. 우수학생 확보 및 관리
9. 취업 지원
10. 그 밖에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

| | | | | | |
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 | 규정 | 문서번호 | TWP-A612 | | |
| | | 제정일자 | 2016. 05. 31. | | |
| |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 규정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 | |
| | | 개정번호 | 2 | 페이지 | 4/7 |

제2장 사업단 운영

제5조(조직구성) ① 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되며,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고, 담당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운영관리 팀 : 사업운영·관리 총괄 및 사업 운영 지원 등
2. 사업자체평가 팀 : 사업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, 결과분석, 사업결과 확산 및 홍보 등
3. 사업지원 팀 : 사업비 출납 및 회계, 사업물품, 용역 계약 업무 지원 등
4. 공동훈련센터 : 통합교육과정 개발, 편성 및 구성 계획 수립, 통합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교원 운영 계획 수립, NCS교육과정 수립 및 지원 등

② 하부조직의 구성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장은 이 대학 전임교원으로 교무위원급으로 보하며,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업단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전문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위원회를 둔다.


②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추진위원회는 산·학·관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,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단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교내·외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| | | | | | |
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 | 규정 | 문서번호 | TWP-A612 | | |
| | | 제정일자 | 2016. 05. 31. | | |
| |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 규정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 | |
| | | 개정번호 | 2 | 페이지 | 5/7 |

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9조(사업단 회계)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이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습근로자 훈련과정 전문대학 현장외교육훈련비의 회계관리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8.02.19.>

-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2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,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입·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업비의 집행) ①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.


-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.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비는 기관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사업비 집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유니테크반 설치 및 운영 <신설 2018.02.19.>

제11조(유니테크반 편성자격) 유니테크사업 고교 과정을 이수한 협약고교 학습근로자에 한하여 유니테크반 편성 자격을 부여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2조(학습근로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) 유니테크반 학습근로자 선발은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하고, 지원방법은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<신설 2018.02.19.>

제13조(유니테크반 운영경비 및 부담) ① 「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현장외교육훈련비를 신청 지원받아 경비로 운영한다.<신설 2018.02.19.>

| | | | | |
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| 규정 | 문서번호 | TWP-A612 | |
| | | 제정일자 | 2016. 05. 31. | |
| |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 규정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 |
| | | 개정번호 | 2 | 페이지 |

- ② 별도의 예산활용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은 현장외교육훈련비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<신설 2018.02.19.>
- ③ 현장외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「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.<신설 2018.02.19.>


- 제14조(학습근로자 등록 및 장학 관련)** ① 유니테크반에 입학한 학습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. 단, 입학금은 학습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18.02.19.>
- ② 직전학기 성적이 2.0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<신설 2018.02.19.>

제5장 유니테크반 수업 및 학사운영 <신설 2018.02.19.>

- 제15조(학기 및 수업일수)**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나누며, 총 3학기를 운영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.(학칙 제5조 (수업연한))
- 단,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신규 학기를 개설하고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남은 1학기의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.<신설 2018.02.19.>
-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(방학 신규학기의 경우 8주 이내로 한다.)<신설 2018.02.19.>

- 제16조(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)**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유니테크 사업 인증 받은 훈련과정개발 보고서를 따른다.<신설2018.02.19.>
- ② 수업은 도제식현장교육훈련, 현장외교육훈련으로 운영하며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% 이상으로 한다.<신설 2018.02.19.>
 - ③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의 경우 현장실습운영규정을 준용하며, 현장외교육훈련의 경우 학칙을 준용하도록 한다.<신설 2018.02.19.>
 - ④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의 경우 별도의 과목을 설정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.<신설 2018.02.19.>

- 제17조(성적)**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출석상황·평소학업성적·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<신설2018.02.19.>
- ② 유니테크의 경우 상대평가로 하되 A학점의 경우 40%미만으로 한다.<신설 2018.02.19.>

| | | | | | |
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 | 규정 | 문서번호 | TWP-A612 | | |
| | | 제정일자 | 2016. 05. 31. | | |
| | 취업보장형 고교·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(Uni-Tech) 운영 규정 | 개정일자 | 2018. 02. 19. | | |
| | | 개정번호 | 2 | 페이지 | 7/7 |

제18조(학사제도 적용 제외) 유니테크반의 학습근로자는 학칙에서 정한 휴학·전과·재입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<신설2018.02.19.>

제6장 보칙 <신설 2018.02.19.>

제19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.<신설2018.02.19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